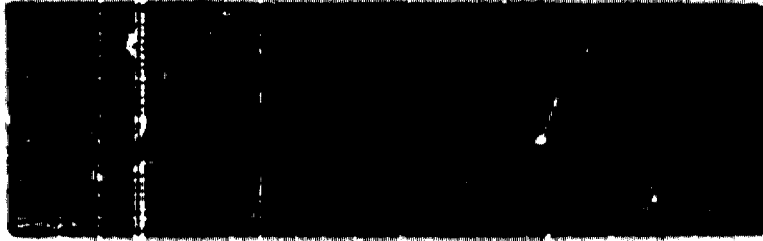


제 123호
1978. 8. 1.

발행일 : 서울특별시청 남대문로
발행처 : 서울특별시청 남대문로
전화 : 78-7884
인쇄 : 서울특별시청 남대문로



차 례

○ 목 록

제 123호 서울특별시청 남대문로)

○ 소 서

제 107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1

제 110호 서울특별시청 남대문로 인가 15

○ 사 명 16

1. 시 공무원은 남포시 인가야 한다.
2. 시보는 서울특별시청 남대문로에 있다.

서울특별시

1076

규 칙

서울특별시건축행정위규규칙을 제정하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양 내 회
1972년 7월 31일

●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6 호

서울특별시건축행정위규규칙

제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건축행정
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
및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위법
설계 및 위법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
는 중요변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승관의 면허
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
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 설계사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를
작성하는 당위를 말한다.
3. 공사감리사라 함은 공사가 설계서에
요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
하는 당위를 말한다.
4. 시공사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,
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
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니하고
자력으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 조 (설계) 건축사는 건축대수선
건축물의 설계를 위촉받았을 때에는
건축사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
여 법한 설계장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 조 (위법) (1)은 (무효설계제외한조치)
위법 또는 무효설계를 하거나 건축사가
신설설계를 제출하거나 적당하다고 판
단하는 설계를 당해 건축사에게 대하여
다음 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
을 말한다.

1. 동일건축물작성설계 2회 이상하
기다 또는 적당하다고판정 - 1회
2. 동일건축물작성설계 3회 이상하
기다 또는 적당하다고판정 - 1회
3. 동일건축물작성설계 4회 이상하
기다 또는 적당하다고판정 - 1회
4. 동일건축물작성설계 5회 이상하
기다 또는 적당하다고판정 - 1회

제5 조 (건축의가호차) 건축사는 건축의가
호차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할
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
건축의가호차의 설계, 공사감리업
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 조 (건축의가호차의정) ① 건축의가호차
업무를 하는 건축사는 5년 이상
건축의가호차의 설계 (또는 제1항설계)
업무를 하여 건축의가호차의 정을
② 건축의가호차의 정은 5년 이상

작성 및 유감검사 부에서 작성과 동시에 기재하여 담당직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조 (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신청보고) 건축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건축주는 허가증 교부시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허가청에 신고(신고 제 2호서식)함과 동시에 면허제 갖 자 일지속취종함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작성 및 준공신고) 건축주가 건축물사본 배수 또는 관보하였을 때에는 그 배수 또는 관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작성 및 준공검사) ①최종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담당직장은 2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담당자는 작성검사부 부에서 작성과 동시에 건축허가청의 사도에 부연사항을 기재하여 담당직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작성검사부 위원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적 또는 회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감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한계) 건축 면적이 150 평이상의 건축물에는 공사감리자를 두어야 한다.

제 11 조 (감리자의무) ①공사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위법 또는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성실

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공사감리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준공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2 조 (감리자면장근무) ①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가 책임하에 보조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공사감리자가 보조원을 부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감리일지작성)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리일지(신고 제 3호서식)를 비치하고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4 조 (공정보고) 관공보고(별지 제 4호서식)는 공사감리자가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부실감리자회의) 시장은 위반 건축물을 명명하게 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감리건축물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실공사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공사감리자가 위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.

<p>1차 - 적요</p> <p>2차 - 당해 건축물의 위험사실이 사실에까지 영입정지</p> <p>2. 당해 건축물이 위험 건축물로서 고발되었을때 - 3월이상 6월이하 영입정지</p> <p>3. 2회이상 위험 건축물 관리처고처명된때 - 6월이상 1년이하 영입정지</p> <p>4. 당해 건축물이 위험 건축물로서 처가처분 되었을때 - 6월이상 1년이하 영입정지 또는 동속위조</p> <p>5.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동정 보고를 이행의 아니 하였을경우 가. 1회 - 적요 나. 2회 - 10일 영입정지 다. 3회 - 15일 영입정지 라. 3회이상 - 1월 영입정지</p> <p>6. 위험부 동정 보고를 하였을때 - 2월이상 영입정지</p> <p>7. 위험건축물의 동정보고서에 서명 남긴하였을때 - 6월이상 영입정지</p>	<p>3. 장기간 관리처인 또는 관리처소유인 장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</p> <p>제17조 (상감검사) ①상감검사는 공사행위와 과다한 위험건축물자를 관리처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②상감검사는 공사행위자의 동정보고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상감검사는 상감검사원 동정보고서와 동시제 건축허가처의 자료에 관여내용을 기재하여 동정보고서의 작성을 명한다. ④상감검사원 동정보고서의 발부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처장관 이하 직급 또는 하급직급을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 (위험건축물신고) 공사행위자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정 또는 동정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하명 또는 건축주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행위자는 허가받은 동정 위험건축물신고(신고번호, 직급)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 (관리처 지정) 공사행위는 위험건축물신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2일이내에 동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동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6조 (공사장의회 표기제) 공사장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관리부 표기할 수 있다.</p> <p>1. 관리처가 사망하였을때</p> <p>2. 위험사실이 발생하게 되어하고 건축주가 협회가 되었을때</p>	<p>제19조 (관리처 지정) 공사행위는 위험건축물신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2일이내에 동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동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</p> <p>이 규정은 197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별표제1호서식													
(1) 허가번호		권속허가처리카드 (권면)											
(2) 건축허가년월일		식거 197 년 월 일				(3) 허가담당자직성명							
(4) 전국주소·성명		시 군 로 동		도 구 동		가 번 기 호							
(5) 건물위치		서울특별시		구 로 동		가 번 기 호							
(6) 설계자의 직책·주소·성명													
(7) 공사감리자의 자격주소성명													
(8) 공사시공자의 자격주소성명													
(9) 용도지역 및 방화지구		주거지역 · 수거구역 · 상업 · 준공업 · 공업 · 녹지 · 미지정 · 방화 · 미관지구 · 기타											
(10) 주요용도및공사종별		조 · 전부 · 증축 · 이설 · 용도변경 · 대수선 · 증요면적 · 기타											
(11) 대지면적		(12) 건축면적		(13) 권면적			(14) 공지면적			(15) 구자장			내 외 면 적 수 평 미 2
(7) 층별		지 하 층	1 층	2 층	3 층	4 층	5 층	6 층	7 층	8 층	9 층	계	
바닥면적													

17-4

제263호

4

표

1972.8.1

별표제 2호서체

전 속 등 가 감 리 자 및 시 등 사 전 성 신 고 서

전 속 주 주소 :

전 속 주 성명 :

허가 위치 : 구 동 면 지

전 속 허가 면 조 및 면 별칭 :

시 등 사 주소 성명 :

감리자의 자격 주소 성명 :

전 속 내 용

대 기 면 지

전 속 면 지

면 · 인 · 지

상 수

공 도

첨과 같이 전 속 등 가 감 리 자 및 시 등 사 를 전 성 하고 신 고 함 이 다.

1972

전 속 주

인

별표 제 3 호 서지

관 사 장 리 일 지

197 2 2 일 (날짜 :)

공 사 제 중 :

부 실 :

유 기 사 단 :

타 건 :

장 리 서 인

관 사 장 리 일 지 : 197 2 2 일

성 명 인

별표제 4 호 서예

건축공사공정표고서

- 1. 허가번호 : 2. 허가일 : 년 월 일
- 3. 건축물처리 : 구 종 면적
- 4. 건축주주소성명 :
- 5. 감독자자격주소성명
- 6. 시공사주소성명 :
- 7. 공사현황 :

구	분	허 가 사 항	시 공 사 단
건축면적			
면적비			
층수			
건설비율		100 %	%

- 8. 기타 사항
- 9. 감독자의견 (제 1 차림여부사양등기내장것)

19

공 건축사 인

위 하

(별표 제 5 호 서식)

위법 건축구사신고서

건축주구소 :

건축주성명 :

머가위치 :

건축허가연도및년월일 :

시공자의주소, 성명 :

감리자의자격, 주소, 성명 :

구조 :

용도 :

층수 :

면적 :

위법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
까지 건축법 제 6 조 2 항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바 다음과
같은 위법사항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
음

- 1.
- 2.
- 3.

신 고 자 (감 리 자)



197 . . .

위 하

보 지 조 서										
순번	소재지	분할 전 묘지			분할 후 묘지 (수유대상)			조 유 가		잔 지 인
		지 면	리 류	지 적	지 면	리 류	지 적	주 소	성 명	
1	임동포구 신림동	150-15	대	330	150-91	대	24	신림동 427-118	홍기수	면적 2,000.000 신림동 33 신리 317
2	"	150-16	"	392	150-72	"	1	신림동 272	정승준	
3	"	147	담	114	147-5	담	67	신림동 171	김상성	신림동 171 김상성
4	"	147-1	전	294	147-6	전	245	"	"	"
5	"	149	대	140	149-2	대	1,154	광포동 26-12	허관영	
6	"	150-33	"	46	150-73	"	17	한양동 5가 112-117	남희진	한양동 5가 150-33 남희진
7	"	150-35	"	73	150-75	"	5	신림동 410-22	김동철	면적 1,500.000 신림동 김동철
8	"	149-1	전	102	149-4	전	0.6	신림동 92	김관영	
9	"	150-39	대	222	150-78	대	399	노량동 235-1	김동기	
10	"	150-40	"	313	150-79	"	108	상림동 376-17	최동호	면적 2,000.000 상림동 최동호
11	"	150-70	"	109	150-76	"	78	신림동 427-150	이과성	신림동 이과성
12	"	150-45	"	206	150-82	"	57	해장동 2-8	조성태	해장동 204 조성태
13	"	150-48	"	160	150-90	"	112			신림동 신림동
14	"	150-46	"	281	150-85	"	72	포가동 69-5		포가동 포가동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01 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건설)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제 1 과와 서울특별시 시민부사실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이다.

1972. 7. 25

서울특별시 상

1. 사업시행자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서울대학교 실업도보 공사 (건설) 폭 : 35 미터 언장 : 523 미터
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1972. 7 - 1972. 10.
5. 소유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및 전답의 표시 : 별첨
6.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 설명 : 별첨

인 가 증

1. 사업시행자 위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로건설 폭 : 35 미터 언장 : 520 미터
 3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 4. 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제 107호
 5. 사업기간 : 1972. 7 - 1972. 10.
 6. 소유 또는 사용할 토지, 전답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 7. 토지 또는 전답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설명 : 별첨
- 위와 같이 아예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인가할 계획인 제도시와 같이 인정함.

1972. 7. 25

서울특별시 상

인가조건

1.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2. 별첨계략 실재도서 (계번도) 에 의하여 시공실제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순위	소재지	분양권표시			분양후표시(수유대상)			소유자		관저인
		지번	리목	지적	지번	리목	지적	주소	성명	
15	신림동	130-51	대	140	130-50	대	122	신림동 45-3	신영철	
16	"	130-53	"	320	130-52	"	232	연희동-400-54 이대원(125-7)	이계호 이영철	
17	"	130-54	"	386	130-59	"	46	방신동 646-5	박영희	
18	"	135-4	"	324	135-13	"	117			김기영
19	"	135-1	전	467	135-5	전	245	연희동 74-62	김기영	
20	"	135-2	답	392	135-7	답	230	연희동-400-54 56-20	한태영	
21	"	135-3	답	89	135-3	답	88.4	연희동-400-54 이대원(125-7)	이계호 이영철	
22	"	135-1	전	96	135-2	전	35	"	"	
23	"	135-9	대	53	134-13	대	10	연희동 500-6	이계호	
24	"	134-3	"	100	134-12	"	58	연희동 568	이계호	
25	"	130-47	"	69	130-03	"	22	연희동 44-3	정영철(59)	
26	"	130-48	"	516	130-64	"	40	연희동 35-2	이영철	
27	"	135-43	"	381	130-81	"	128	이촌동 200-26	한영철	
28	"	130-45	"	298	130-80	"	164	연희동-400-54 이대원(125-7)	이계호 이영철	
29	"	130-37	"	420	130-77	"	96	포당동 235-1	김영희	

순번	소재지	분할전표시		분할후표시(추후대상)		소유자		판제인
		지번	지적	지번	지적	주소	성명	
30	신원동	150-52	대 140	150-52	대 140	잠미동 237-190	박태인	
31	"	150-3R	" 57	150-38	" 57	노양신동 235-1	김봉식	
32	"	"	"	150-0	" 47	남정동 378-17	조동근외 3인	
33	"	"	"	150-44	" 38	이촌동 300-26	안경원	
34	"	상 10-5	집 351.50	상 10-7	집 008.00	인지동 270	마옥성	간지안 조용길
35	"	150-34	대 165	150-74	대 395	신원동 410-22	김부천	간지 의뢰은행
36	"	"	"	151-4	" 234	신원동 171	전학수	
	계		36건			5,166		

전 황 소 시							
순위	소재지	구 소	총면적	수유면적	소유자주소	성명	비고
1	신림동154-4	연 와 소 정 국 개	24.68	24.68	신림동 171	전 학 수	
2	"	성인동로리프 정 국 개	14.42	14.42	"	"	
3	신림동154-4	계 별 부 옥 주 스 대 프 습	19.36	19.36	방화동 568	이 유 신	
계			58.46	58.46			

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10 호

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(서울도시계획사업(도보건설) 실시
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
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고시한다.

2.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
비제 1 과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실에 비치
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
보이게 합니다.

가. 유효기간 : 1972.8.1 - 15(14일간)

1972. 7. 31.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자의 위치 : 성북구 수유동
216 - 2 279 - 3 도시계획사업
쪽 25 길아 540
2. 사업의 종류 및 신청 : 수유동지하
도보건설공사
3. 사업시행장 : 서울특별시청
4.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:
1972. 8 - 72. 10.
5. 지유 또는 수용한 노선 및 건물외
조지 및 지면 및 지목 또는 건물외
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관
계된 주소, 성명, 성년
별칭, 주민등록번호 (성년)
(도시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리제 1 과
4 방화동 시민봉사실에 보관함).

사 명

○ 1972.7.27.

보전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법 구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
호에 의거 파견에 임함.

영동보통 지방행정주사 임 정 회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
제 1 항 제 1 호의 규정 에 의거
고 직위를 개제함.

영동보통 지방모부지원 임 명 용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
제 1 항 제 1 호의 규정 에 의거
고 직위를 개제함.

충 구 지방행정서기보 임 치 용
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
제 1 항 제 1 호의 규정 에 의거
고 직위를 개제함.

충남보통 지방행정서기보 조 종 윤
서충북면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서기보 임함.
3 호봉을 급함.
충남구군무를 명함.

부삼기술부 지방행정주사보 아 갑 수
주요직임은 지방행정주사보 임함.
서충북면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.
서대문구군무를 명함.

경북금융군 지방행정서기보 이 오 석
서충북면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.
3 호봉을 급함.
서대문구군무를 명함.

충남남해군 지방행정주사 심 우 현
서충북면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.
충남구군무를 명함.

경기도수원시 지방행정서기보 조 종 석
서충북면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.
2 호봉을 급함.
서대문구군무를 명함.

○ 1972.7.28.

서기관에 임함.
6 호봉을 급함.
서충북면시 공무원고육원
교수부 군무를 명함.
내 통 명

윤 낙 환

○ 1972.7.31.

기 전 과 지방기계지원 지 종 권
지하철건설본부군무를 명함.

성 북 구 기계기사보 오 정 환
지하철건설본부파견군무를명함.

시흥보조수원지 지방전기기사보 이 승 만
지하철건설본부파견군무를명함.

<p>원 호 의 건축기사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 지방건축기사제 임함. 4호봉을 승급. 품보우급우를 명함.</p>	<p>윤 배 송</p>	<p>영 우 로 수도사업소 주택건설과</p>	<p>지방보육기사보 마천군우를 임함. 지방보육기원 과천군우를 명함.</p>	<p>이 상 권 조 용 석</p>
<p>경복궁승준 지적기원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. 지방지적기원보제 임함. 3호봉을 승급. 성보우급우를 명함.</p>	<p>정 태 근</p>	<p>구 회 정 개양리</p>	<p>1과 지방보육기원 과천군우를 명함.</p>	<p>우 제 오</p>
<p>한강건설사업소 지방보육기사보 개양리 과천군우를 명함. 구 회 정 2과 지방보육기사보 주택건설과 마천군우를 명함.</p>	<p>김 유 진 이 상 권</p>	<p>서 예 분 수도사업소 주택건설과 마포수목사업소 주택건설과</p>	<p>지방보육기원보 과천군우를 명함. 지방보육기원보 과천군우를 명함.</p>	<p>나 석 근 유 용 선</p>

시. 율. 특. 면. 시. 장